

#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

## 제 1 장 교회의 선교<sup>1</sup>

### F-1.01 하나님의 선교

복음서의 복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신다는 메시지이다. 성서에 기록된 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취하시어, 세상 안에서 사시고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알린다. 피폐한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눈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님의 은사를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형태와 본질을 부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례반과 성찬대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도록 초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제자직에 부름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 사명에 참여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와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고 즐겁게 체험하며, 하나님과 계약친교 안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

###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

#### 1.0201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셨으며, 그리스도를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의 삶과 선교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다.

<sup>1</sup> 이 문서와 정치/형태를 통해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인 “Church”(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은 보편교회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제목(예: 미장로교회)의 일부로 쓰인 경우는 예외이다.

## 1.020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성화와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의 뜻 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 1.0203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심

그리스도는 교회에 신앙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규율을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에 일치되게 다스려져야 한다.

## 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그의 권위에 예속되었고, 생동적이고 환희에 찬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 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바탕이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기쁘게 머무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화해하시며,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다(골 1:19-20).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견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와 청원, 그의 거룩함과 연합을 받아들인다.

**F-1.03 교회의 부름 받음**

## 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공동체로서 삶에서 이러한 은사를 증명하기 위해 힘쓴다(고전 12:27-28):

교회는 자체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한분께만 의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삶과 모든 것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교회는 현재 그 약속된 새로운 창조의 힘을 실행한다.

교회는, 죄가 용서되고 화해가 이룩되고 적대하는 분열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는 것 이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사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1.0302 교회의 표징<sup>2</sup>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고 확신한다.

#### a. 교회의 일치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 구세주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다. 교회가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추구하며, 기독교 공동체만이 혜택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이다. 왜냐면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엡 4:5-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되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모든 이들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사제가 되어주는 것이고, 세상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 각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 다른 교단으로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모호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미국장로교(PCUSA)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상기 언급의 그 모호성을 줄일 것을 다짐한다. 또 나아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교단들과의 교류를 기꺼이 추구하며 심화시킬 것이다.

#### b.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선별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교리의 순수성이나 교회 행동의 공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sup>2</sup> 신앙고백서 니케아 신조 1.3 참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과 직제사역자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생활하는 각 신앙인과 각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의 수단에 의존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개인생활에 실재하는 죄가 집요성을 고백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순결성과 공의로움과 진리를 위해 정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받고 있음을 고백한다.

#### c. 교회의 보편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불화가 극복되게 하시고, 분열이 치료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시공간·인종·국적·연령·조건·신분의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감싸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포용성을 각처에서 증거하기 위해 힘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를 증거하면서, 보다 깊은 믿음과 보다 큰 소망과 보다 완전한 사랑을 향해 가도록 교회를 부른다.

#### d.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구속의 복음을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사도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충실하게 전파하기 위해 힘쓴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받는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증거를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졌고 지금도 보내지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부서진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지금도 세상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과 행위로서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순응하도록 파견되는 것이며, 또한 현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파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장로교(PCUSA)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며, 수세기 동안 하나님 선교와 밀접한 연속관계에 있어왔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힘쓰며, 또한 신앙고백의 표준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힘쓴다. 교회는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홀로 구세주요 주님이시며 그의 제자로서의 새 삶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리기 추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제자들을 만드는 일;
- 예배와 기도, 친교와 봉사의 심도있는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
-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의 필요를 돌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좌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이룩하는 일.

*1.0303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각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은 동 교단 초기부터 다음의 교회들을 (어디에 소재하든 간에) 참된 교회의 존재로 표시했다

-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리게 하는 교회
-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교회
- 교회 규율을 준엄히 집행하는 교회.

현시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선교에 충실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고  
그러한 새 창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성례전을 집행하고 받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이 되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앞으로 다가올 천상의 만찬을 고대하면서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 현재에서 결속을 다짐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 안에서 살며

---

<sup>3</sup>스콧 신앙고백서 제 18 장 참조(*신앙고백서* 3.18)

하나님 선교에 헌신한다.

#### 1.0304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친교;
- 거룩한 예배의 유지;
- 진리의 보존;
-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다.<sup>4</sup>

### F-1.04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자세

#### 1.0401 연속성과 개혁

미국장로교(PCUSA) 헌법에 명시된 장로교 정치형태는 성경에 근거하며, 참된 교회의 표징들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는 교회의 주님이신 분에게 종속되는 모든 것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예배 공동체와 개인 신자들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활동 안으로 끌어당기신다. 교회는 개혁과 참신한 방향을 추구하면서, 우리 앞에 서서 자신을 따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한다. 성령의 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 받기를”(롬 12:2) 구한다.

#### 1.0402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PCUSA) 헌법의 장로교 정치제도는 성경에 비추어 세워진 것이지만,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존속을 위해 본질적이라거나, 전 기독교인들에게 의무화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0403 다양성과 포용성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신 분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sup>4</sup> 교회의 큰 목적에 관한 이 선언은 북미 연합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동 교단은 1958년에 미국장로교회와 통합하였고 이 선언은 통합된 교단의 명칭이 된 미연합장로교 교단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선언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다양한 결정을 따라가며, 그리고 동 교단 헌법 개정을 앞두고, 1910년에 북미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 3:27-29).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일치는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에 반영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민족·나이·성별·지체부자유·지리적 위치·신학적 입장에 대한 구별 없이 그들을 세례를 통해 결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떤 이를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미국장로교(PCUSA)는 장로교 회원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룹들에게 예배와 치리 또는 삶이 일어나는 곳에서 전면 참여와 전면 대표를 반드시 보장하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사유에 의해 참여와 대표의 권리를 부인 당할 수 없다.

#### 1.0404 열린 자세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안 선교에 대해 새로운 개방성을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시고, 죄 많은 인간의 저주를 괴로워하시며 새로운 인간을 일으키시고 모든 피조물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미래 뿐만이 아니고, 피조성, 죄성, 깨어진 관계, 고통의 실존을 전 인류와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된다. 미국장로교(PCUSA)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음을 추구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활동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순종에 대해, 그리고 예배와 사역에 대한 보다 즐거운 참여에 대해 새로운 열린 자세;

새로운 인간성의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연령·인종·민족·세상적 조건의 남녀 신앙공동체의 회원자격에 대해 새로운 열린 자세;

이러한 제도적 형태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활동에 대해 충실성과 유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형태의 가능성과 위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열린 자세;

보다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큐메니칼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 하심에 대한 새로운 열린 자세.

## 제2장

### 교회와 신앙고백

#### F-2.01 신앙고백적 진술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한다. 이러한 고백에서 교회는 교인과 세상을 향해,

교회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 교회의 믿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침서이고, 그것들은 개혁주의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며, 그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것들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훈련시킨다. 그것들은 개인의 신앙결단 및 신앙공동체의 생활과 복음 증거를 강화하는 데 요긴한 것이다.

이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어난 것이다. 그 고백들은, 복음 사가들에 의해 위기에 처해질 진리로 인지되었던 바로 그러한 핵심에서 복음의 진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체험한 결과로서 나타난 고백들이다. 그 고백들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의 추정 안에서 진리를 반영하는 한편, 복음의 보편적 진리에 호소하고 있다. 그것들은 때때로 서로를 긴장관계에 두기도 하였으나 공통의 신앙 전통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다.

####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예속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은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찬동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히 거절하는 안수 받은 자에게 교회는 가르침과 조언을 주며 권징 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회 신앙고백서 변경 절차는 교단 전체적으로 고도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준엄한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치리와 교리의 표준 개혁에 개방적이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를 확인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하여 “개혁된 교회이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 F-2.03 보편된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보편된 교회의 신앙을 증언한다. 그 신앙고백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즉 정전(正典)으로서의 성경과 전세계 교회적인 신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정의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형성과 채택을 인정하는 그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 F-2.04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들 주장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개신교의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슬로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극시키는 이해의 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 F-2.05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절대주권의 공의로움과 사랑의 자유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며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는 신의 주권, 거룩하심, 섭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이 핵심적 선언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전통의 다른 큰 테마들이 있다:

구원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 선택;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기강있는 배려에 의한 계약의 삶을 사는 일;

걸치레를 피하고, 하나님 창조의 은총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 정신;

인간에게 우상숭배와 독재의 경향이 늘 있음을 인정하는 일, 즉 하나님 계명에 순명하는 삶을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는 일.

## 제 3 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 F-3.01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sup>5</sup>

본 *규례서*를 제시하면서, 미국장로교(PCUSA)는 이 나라 공통 유산의 일부가 되어왔으며 장로교 개념과 교회 치리제도의 기본이 되어 온 교회규례의 역사적 제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 3.0101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심

a.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sup>6</sup>이 신앙이나 예배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율로부터 자유하다.”<sup>7</sup>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판단의 권리들을 보편적인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5 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4)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4)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계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6 여기 인용한 인간과 인간의(“men”과 “man’s”) 단어는 18세기에서 나온 말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신앙고백서* 6.109) 참조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된다는 사실 이외에 국가 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3.0102 집단적 판단

상기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각 기독교 교회나 연합체나 특정 교회들의 연합이나 조합의 각각은 그 교류 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교인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의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그 자격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며,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 3.0103 제직원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직원을 임명하시어,<sup>8</sup> 그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토록 하신다; 이것은 모든 제직원과 전체 교회에 주어진 의무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권징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 3.0104 진리와 선함

진리는 선함에 도달하기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어떤 중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거나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받아들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 3.0105 상호관용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좋은 품성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개 교인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3.0106 교인들에 의한 제직원 선출

<sup>8</sup> 제직원과 제직의 용어는 제 원칙에 관한 역사적 언문의 일부로서 여기에 보존되어 있다. “직제사역자”와 “직제사역”의 용어들이 정치형태 전반에 나타나는데 이는 제직원과 제직 대신에 사용되어 있다

교회 제직원의 품성, 자격, 권위만이 아니라 그 직분 부여와 제도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명시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의 권한을 수행할 제직원을 선출하는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한다.

### 3.0107 교회의 권한

모든 교회 권한은 전체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든지 혹은 권한위임에 의해 대표되는지 간에, 오직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교회의 어떠한 치리회도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모든 대회와 중앙협의회가 인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 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제 원칙이 확고하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은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오로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권력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다, 권징은 다만 그 자체의 공의로움, 공정한 대중의 승인,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발생한다.

## F-3.02 장로교 정치의 원리

미국장로교는 보편교회 원칙의 맥락 안에서 장로회 정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특별한 결단을 재확인한다:

### 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집합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며, 교회라 부른다.

### 3.0202 장로에 의한 치리

이 교회는 노회, 즉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에 의해 치리된다. 치리장로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 하기(마 20:25)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을 분간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강화하고 육성하도록 개교회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역과 증거하는 일에 준비시키는 모든 일에 헌신해야 한다.

<sup>9</sup> 제 원칙에 관한 역사적 어문 일부로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치리회”는 그 용어가 “협의회”로 바뀌어 정치형태 전반에 나타나 있다.

*3.0203 협의회 회집*

이 장로들은 각급 협의회에서 회집한다. 이러한 협의회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협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가 되어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서로 공유한다. 협의회들은 서로 별개적이거나 어느 한 협의회는 이행을 통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행위가 되며 이러한 점에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교회의 상회나 상회의 대표는 교회의 하회를 치리한다.

*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반영함*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변하기를 구한다.

*3.0205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투표로 결정하며, 다수결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3.0206 검토와 감독:*

상회 협의회는 하회 협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조회나 불평이나 상소가 들어왔을 때 논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3.0207 협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와 집사는 오로지 협의회 권한으로만 안수된다.

*3.0208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교회 관할권은 공유 권한이며, 협의회에 회집된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0209 일반 협의회 권한*

협의회는 교회 헌법이 정한 의무와 권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각 협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노회에 예속된 것으로 언급되지 권한을 가진다.

**F-3.03 기초 선언문**

이 단원에 포함된 선언문들,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는 미국장로교(PCUSA) 정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교회적이고 역사적인 결단들을 기술한다. 이 헌법 어느 조항이든지 전체 헌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규례서*의 어느 조항도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떤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조항들 간에 긴장과 모호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사법전권위원회가 전 조항에 대해 효과가 미치는 방법으로 해소한다.

#### F-3.04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서들을 포함한다:

- 니케아 신조 (The Nicene Creed)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스콧 신앙고백서 (The Scots Confession)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 제2스위스 신앙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 바르멘 신학선언 (The 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
- 1967년도 신앙고백 (The Confession of 1967)
- 간추린 신앙고백 (A Brief Statement of Faith) –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 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Worship)
- 권징조례 (The Directory for Worship)

#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 제 1 장 개교회와 교인 자격

### G-1.01 개교회

#### 1.0101 개교회의 선교적 사명

개교회는 특정한 맥락에서 선교적 사명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이다.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복음의 은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교회에 주신다. 개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교회들이 교파 안에서 결속되고, 석명(釋明)의무와 책임의 관계로 연합되고 전체 이익을 위해 각기 힘을 기여할 때 집단적으로 교회라고 불린다.

회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례전의 나눔과 하나님과 그들 상호간의 계약의 삶을 살면서 선포 사역들을 수행해나간다. 회중의 삶 속에서, 각 신자들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회중은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세계를 위해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정의와 공의로움을 대변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증거한다.

#### 1.0102 개교회의 친교

미국장로교 정치제도는 남녀 신자들 및 어린이들의 친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상호 계약관계로 연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직의 기틀은 친교에 바탕을 두며,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이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1.0103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치리 받음

이 정치형태에서 사용되는 “개교회”는 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회 헌장에 의해 노회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이다. 미국장로교의 각 개교회는 이 헌법의 처리를 받는다. 개교회의 회원들은 당회의 지도, 그리고 상급 협의회(노회, 대회, 총회)의 지도 하에 놓인다. 당회는 개교회 삶을 안내하고 치리하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모든 사람들의 섬김과 전체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과제를 수행하는 일에서 개교회를 선도한다. 노회에 의해 수립된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증거 역시 이 헌법의 처리를 받으며, 노회의 권한에 종속된다.

### G-1.02 개 교회의 조직

미국장로교 내의 개 교회는 노회의 권한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으며 본 헌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그 기능을 한다.

#### 1.0201 조직 계약

개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노회는 새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단결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부터 노회회원권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람들은 함께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기에 서명한 저희들은 하나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의 \_\_\_\_\_ 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연대하여 함께 살고 함께 사역할 것과, 미국장로교(PCUSA) 신앙과 선교와 규례에 따라 이 장소에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묶이고 상호간에 묶일 것을 서약하고 계약합니다.

“(서약자들 서명)”

그런 다음 노회는 단독재량권으로, 그들이 노회 안에 조직된 개교회라고 선언할 수 있다. 개교회는 그런 다음에 치리장로의 선출과 (원하는 경우) 집사 선출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노회는 새로 선출된 이들 제직들을 준비시키고 심사하여 안수시키고 취임시킨다. 노회는 목회 지도자를 확보하는 일, 개교회의 섬김봉사와 증거하는 계획을 짜는 일, 다른 개교회들과 사역을 조정하는 일, 미국장로교(PCUSA) 헌법에 따르는 법인조직과 개교회 정관에 관해 협의하는 일, 그리고 교단 전체의 큰 삶 속에서 개교회의 선교가 강화되도록 기타 형태의 지지와 격려를 하는 일에서 개교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 G-1.03 개 교회의 회원권

#### 1.0301 회원권과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회원으로 입회하도록 부르신다. 세례는 그러한 부름과 인간 삶의 주장과 입교인 자격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시이다. 어린이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가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입교인 계약에 들어가는 자들의 세례인 경우, 이것은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 충실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진리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그 선교적 사명 뿐만 아니라, 입교인에 대한 이해도 제공한다.

## 1.0302 환영과 개방성

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믿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유로나 교회 회원권을 거부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도록 교인들을 인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에 대해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다.

## 1.0303 교인명부에 입적

다음의 방법으로 활동교인 명부에 입적될 수 있다:

- a. 회원의 의미 및 책임에 대해 당회의 신중한 심사를 받은 다음, 공적인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함.
- b. 교회 이적 당시에, 다른 기독교 교회의 교인일 때는 이명증서에 의해서,
- c.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일 경우, 신앙 재확인과 공적인 표명을 함으로써.

## 1.0304 교인들의 목회

a.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입교권은 기쁨이고 특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신실한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활동에 책임있게 참여한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한 참여에 다음이 포함된다:

언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개교회의 공동생활과 예배에 참여하는 일,

기도와 상호배려와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서로 들어 올리는 일,

성경 공부와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는 일

금전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의 목회사역을 지원하는 일,

교회 내에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을 표명하는 일,

타인의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활동에 응답하는 일,

개인과 가족과 직장의 관계에서,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적 관계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일,

평화, 정의, 자유, 인간 성취를 위해 세상에서 사역하는 일,

교회의 치리하는 책임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입교인 자격의 무흠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자신의 참여를 늘이고 보다 의미있게 하는 방법을 숙고하는 일이다.

b. 교인들은 교회의 사역 참여의 순결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숙고하고, 이로써 교회에 대한 섬김을 증진하고, 보다 의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 G-1.04 회원의 범주

미국장로교의 개 교회 회원권은 세례회원, 활동회원, 관련회원을 포함한다.

##### 1.0401 세례회원

세례회원은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았으며(현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당회에 의해 세례회원으로 입적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교인이다. 그러한 세례회원은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 1.0402 활동회원

활동회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이 교회의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또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이다. 활동회원은 또한 교회 치리에 참여하고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G-2.0102 참조). 활동회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G-1.0303 에 개요되어 있는 회원된 책임과 규율에 재결단을 한다. 개교회의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책임은 당회에게 있다.

##### 1.0403 관련회원

관련회원은 기독교의 타 교파에 속하는 다른 교회의 회원으로서, 소속 교회의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옮겨왔으며, 해당 협의회와 소속한 교회로부터 성실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시한 바 있고, 본 교회 당회에 의해 관련회원으로 입적된 교인이다. 관련회원은 개교회의 삶에 활동회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개교회의 직제사역이나 다른 직무에 선출될 수 없다.

##### 1.0404 기타 참석자들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적극적인 교회 참여를 중지한 사람들도 환영하며, 그들이 교회의 생활과 예배에 참여하고 목회적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주의 만찬 초대는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확대된다. 성만찬상 접근은 합당한 자들만에게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들어오는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특권임을 명심한다 (W-2.4011). 타교파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들은 W-2.3014 조항에 따라 어린이 세례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G-1.05 공동의회

#### 1.0501 연례회의와 특별회의

개체교회는 연례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또한 공동의회에서 숙고되기에 적절한 어떤/모든 목적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회의 의사일정은 그 회의가 소집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교회의 연례회의나 특별회의에 참석한 전 활동회원들은 투표권을 가진다. 개체교회들은 의사일정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 1.0502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또는 교인 명부에 들어있는 활동 교인 4분의 1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당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의회 소집에 대해 적절히 공고되어야 한다. 공동의회는 사전 공고에 관한 최소 요건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의소집의 사전 공고를 예배 중에 적절하게 해야 한다.

#### 1.0503 공동의회에 적절한 의사일정

공동의회에 다루어질 의사일정은 다음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 a. 치리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재단 이사들을 선출하는 일;
- b.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 c.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 목사(들) 청빙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또는 해소를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동의하길 거절함으로써;
- d. 부동산의 매입, 모기지, 또는 매각하는 일;
- e. 헌법에 허락된 바에 따라 면제 청원을 노회에 제출함으로써 (G-2.0404)

시민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교회조직과 법인적 업무 둘 다 동일한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 1.0504 사회자

취임된 담임목사가 보통 모든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한다. 담임목사가 사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이나 그녀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가르치는 장로나 노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회자로 청해야 한다. 취임된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나, 취임된 담임목사가 사회를 진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노회는 사회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505 서기와 회의록

당회서기는 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서 서기로 봉사한다. 당회서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회가 그 회의를 위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반드시 교회의 결정을 그 회의록에 기록한다.

## 제 2 장 직제사역, 파송, 인정

### G-2.01 교회의 직제사역

#### 2.0101 그리스도의 목회

교회의 목회는 전체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립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 남녀의 목회활동을 통해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의 목회가 모든 목회의 토대이고 기준이다. 즉,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오신 분(마 20:28)이 모범이다. 목회의 기본 형태는 하나님의 전 백성들에 대한 목회이고, 그들의 일부가 부름을 받고 특정 직제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인들과 직제사역에 있는 이들은 다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섬긴다.

#### 2.0102 직제사역

본 교회에서 유지되어온 교회의 직제사역은 신약에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서, 집사들과 장로들(가르치는 장로와 치리장로들)을 말한다. 직제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삶에 질서를 주는 은사이다. 이러한 직제사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의 총체적 목회에 대한 전 회원들의 헌신의 중요성이 절대 감소되지 않는다.

장로교의 정치는 대표정치이며, 노회 회원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는 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조직의 선출을 받지 아니하고는 개교회의 직제사역이나 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르치는 장로나 치리장로나 집사의 안수는 그 직제 사역에 고유하게 주어진다.

#### 2.0103 직제 사역에 부름

교회 직제사역으로 부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러한 부름은 개인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승인과 교회 협의회에 일치된 평가에 의해 명백해진다.

#### 2.0104 은사와 자격

a. 교회 안의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이들— 집사들, 치리장로들,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직분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특정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강한 믿음과 헌신적인 제자직, 그리고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들의 생활 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고, 교회 협의회의 일치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b. 교회 직제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말씀에 순명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서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혼인의 계약 안에서 충실하게 살거나(W-4.9001), 또는 독신으로 정절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서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을 집사나 치리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로 안수하거나 취임시켜서는 안 된다.

### 2.0105 양심의 자유

직제사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순결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장로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혁주의 신앙과 정치체제의 근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으며 또한 본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장로교의 직제사역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특정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가 직제사역을 추구하거나 계속 맡으려고 생각하는 한, 교회의 제 표준에 해석된 대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신앙과 정치체제의 근본으로부터 떠났는지의 여부는 먼저 관계되는 개인의 결단에 의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의 책임은 그이나 그녀가 회원으로 있는 협의회가 져야 한다.<sup>10</sup>

## G-2.02 집사들: 연민과 봉사의 목회

### 2.0201 집사 정의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잃은자, 외로운 자, 핍박받는 자, 부당한 정책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자, 괴로워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영적 인품과 정직성의 평판이 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형제자매애와 진심어린 연민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sup>10</sup>미국장로교 역사의 아주 초기, 총회가 아직 구성되기 전에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의 합동계획에 다음의 문장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게 될 때 각 회원은 그러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수동적으로 따라야 한다; 만일 본인의 양심이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 없게 한다면 온건하게 설득하고 반대이사를 표시하는 충분한 자유를 행사한 후 분열을 시도하지 말고 평화롭게 우리 교파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언제나 장로교의 정치나 교리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교단의 결정권을 이해하는 데서 배려된 것이다.’ (Hist. Dig. (P) p. 1310.) (1758 년 합동계획, II 부.)

### 2.0202 당회 권위 하에 놓임

집사들은 개별적으로 파송받을 수도 있고 집사회로 조직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그들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당회 권위 하에 놓인다. 집사들이 지교회 내의 특별 직분을 맡을 수 있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인들을 돌보는 일,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일, 자선의 넉넉한 마음을 함양하는 일, 특정한 사람들이나 대의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일, 또는 개체교회의 건물이나 재산을 감독하는 일이다. 주의 만찬에서 보조하는 일을 포함하여 당회가 위임하는 다른 임무를 집사들이 맡을 수 있다. (W-3.3616). 지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집사의 직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집사회 조직이나 개별 집사직을 두지 않는 개교회에서 이 직제사역의 기능은 치리장로나 당회가 책임 맡아야 한다.

## G-2.03 치리장로들: 분별과 치리의 목회

### 2.0301 치리장로의 정의

구약시대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을 치리하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개교회들은 지혜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자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치리하는 장로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교인들 위에 “균림하기”(마 20:25)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을 분간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강화하고 육성하도록 회중에 의해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장로들과 더불어 치리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치리와 영적분별을 하며 규율을 실행한다. 그들은 또한 에큐메니칼 관계를 포함하여 개교회와 전체교회의 삶을 책임 진다. 지교회에서 선출될 때, 그들은 당회 회원으로서 충실한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한다. 차상급 협의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치리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에도 피선될 자격이 있다.

## G-2.04 치리장로들: 치리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사항

### 2.0401 치리 장로와 집사의 선출

치리 장로들과 집사들은 개교회에 의해 남녀 교인들 가운데서 선발된다. 치리장로들과 집사들의 공천과 선출에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와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F-1.0403). 치리 장로와 집사는 교인들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하고, 교인들을 대표하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개교회는 공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적인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단, 동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적어도 3 명은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적어도 1 명은 현 당회에서 시무하는 치리장로이어야 한다. 선거 시, 개교회 활동교인들중 누구라도

공동의회 회의장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항상 주어져야 한다. 출석한 전 활동교인들과 투표의 과반수로 선출되어야 한다.

#### 2.0402 치리 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준비

교인들이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제사역에 선출되었을 때, 당회는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마련해줄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들의 개인적 신앙에 대해, 교회의 헌법에 내포된 교리·정치, 권징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대해, 그리고 사역 의무사항에 대해 시험해야 한다. 당회는 그들의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그들이 기꺼이 떠맡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 이 시험에서 통과되면, 당회는 안수식과 임직식 날짜를 잡아야 한다.

#### 2.0403 안수와 임직 예식

안수식과 임직식은 그 초점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맞추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설교를 포함되어야 한다. 집례자나 권한을 받고 집례하는 사람은 치리 장로와 집사 사역의 본질을 간단히 진술해 주어야 한다. 안수식과 임직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예배모범(W-4.4000)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 2.0404 임직 기간

치리장로들과 집사들은 3년 이상의 임기로 당회와 집사회에 선출될 수 없으며, 개교회의 규칙에 따라 재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치리 장로나 집사도 연속 6년 이상 시무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연속 6년 시무한 치리 장로나 집사는 최소한 1년간 동 집사회로부터 안식년을 취해야 한다. 각 연조에 선출된 인원을 가능한 한 동수가 되게 하며, 매년 교체되는 조는 한 조가 되도록 한다. 이 임기 제한의 면제를 서면으로 요청받을 때 노회는 다수결에 의해 예외를 개교회에 허용할 수 있다.

안수 받은 치리장로와 집사는 본 교단에 속하는 지교회에서 활동회원으로 있는 한, 당회나 집사회에 시무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은 안수 사역의 책임이 지속 된다. 단, G-2.0406, G-2.0407 조항이 적용될 경우나 권징조례에 의거한 예외의 경우가 있다.

#### 2.0405 관계의 해소

치리장로나 집사는 당회 동의를 얻어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을 그만둘 때, 치리장로나 집사는 그 당회 회원이나 집사회 회원을 그만두는 것이다. 치리장로나 집사가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 부자유 이유로 취임된 개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1년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그녀의 활동 관계는 당회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 단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예외 사유가 기록 되어야 한다.

## 2.0406 치리 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해제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대상이 되거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무흠의 치리장로나 집사가 직제사역으로부터 직분 해제를 소속 당회에게 청원했다면, 그 당회는 그러한 직무해제를 허가하고 동시에 치리장로 명부나 집사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치리 장로나 집사 쪽에 잘 못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 치리장로나 집사의 직분 수행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종단을 의무화 한다. 직분에서 해제된 그러한 사람의 신분은 어느 교인과도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만일 본 조항에 의해 해제된 어느 사람이 후에 직제사역에 복원되기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가했던 당회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하며, 다시 안수 받지 않고 그 당회의 승인을 받아 해제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한다.

## 2.0407 관할권의 포기선언

치리장로나 집사가 본 교단의 관할권 포기를 선언하는 서면진술서를 당회 서기에 제출할 때, 그 포기선언은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회가 불승인한 사역을 치리장로나 집사가 고집할 때, 그 당회는 그이나 그녀와 상담하고 당회의 불승인을 정식 통고해야 한다. 상담의 기회가 주어지고 당회의 서면 불승인 통고를 받은 다음에도 치리장로나 집사가 불승인된 일을 고집한다면, 당회는 그 치리장로나 집사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포기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할권의 포기선언은 회원권과 직제사역에서 그 치리장로나 집사를 제명하는 것이며, 사역의 임직 수행을 종결시킨다. 포기선언의 사실이 차기 당회 모임에서 당회서기에 의해 보고되어야 하고, 그 회의록에 기록 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치리장로나 집사의 이름은 당해 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그 밖의 행정적 조치들이 본 헌법의 의무규정 대로 취해져야 한다.

## G-2.05 가르치는 장로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 2.0501 가르치는 장로 정의

가르치는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로도 칭함)는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회 사역에 준비시키는 모든 일에서 헌신해야 한다(엡 4:12). 또한 노회가 허가한 다양한 목회 사역에서 봉사할 수 있다. 장로가 말씀의 설교자이며 가르치는 교사로서 시무할 때는 교회의 믿음을 가르쳐야 하며, 이로써 교인들이 복음의 모범에 맞추어 살고 증거와 봉사를 위해 강건해지도록 한다. 장로가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례하는 일로 섬길 때는 하나님 은사의 신비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사람들의 비전을 고양시켜야 한다. 장로가 담임목사의 직분으로 섬길 때는 일상의 삶 속에서 투쟁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교인들을 지지해 주는 힘이 되어야 한다. 노회에서 섬길 때는 치리의 책임에 참여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을 분별하고, 헌신과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힘써야 한다.

## 2.0502 노회와 가르치는 장로들

주님께서 특정 회원들을 가르치는 장로로 부르시며, 교회는 노회의 결의를 통해 그 부르심을 확인한다. 노회는 특정 사역이 교회의 선교에 유익한 일인지, 가르치는 장로로서 안수를 요구하는 인정된 목회에 대한 부르임인지, 결정해야 한다. 가르치는 장로는 그 목회 사역의 수행에 대해 노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가르치는 장로는 노회의 고유한 결의에 의해 노회로 입회권을 부여받으며, 어떤 목회관계도 노회의 승인 없이 수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 2.0503 회원의 범주

가르치는 장로는 노회 회원이며, 그 노회 인준을 받은 목회 활동을 해야 하고, 그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보통회원이 되거나 명예은퇴를 한다.

## a. 인준받은 목회

인정된 목회는 반드시

(1)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장로교의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와 부합됨을 실증한다;

(2) 타인을 섬기고 도우며, 타인의 목회를 적극 지원한다;

(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충실한 증거를 보인다;

(4) d. 조직체와 기관과 단체 뿐만 아니라 노회에게도 목회 성격과 목회 행위를 보고하면서 수행된다;

(5) 노회의 심의와 예배와 사역에서 책임있는 참여를 하고, 또한 본 교단의 개체교회 삶이나 미국장로교(PCUSA)와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 삶에서도 책임있는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G-5.0202).

가르치는 장로들이 교단 관할권 밖의 인정된 목회로 부름 받을 때, 그들은 복음의 목회를 함께 나눌 수 있게 기여하는 삶의 질을 증거해야 한다. 그들은 개교회와 노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관계에 참여해야 하고, 교단의 차상급 협의회와 이사회 그리고 그 협의회 기관에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노회는 모든 가르치는 장로들이 개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인준된 목회활동의 사역에 대해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b. 보통회원

보통회원(member-at-large)은 이전에 인준 목회에서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G-2.0503a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목회직 수행을 포기할 의도는 아직 없는 가르치는 장로를 말한다. 가르치는 장로가 보통회원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노회가 인정하는 사유(가정의

책임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보통회원은 G-2.0503a 기준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따라야 하며, 개체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권리가 있다. 보통회원의 신분은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 c. 명예 은퇴 목사

노회는 어느 노회 회원의 요청에 의해, 고령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회원을 명예은퇴목사로 지명할 수 있다.

#### 2.0504 목회 관계

가르치는 장로들이 개교회의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받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복음에 초대하고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삶과 관계의 질에 책임 진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교인들과 더불어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치리장로들과 더불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고무하고; 교회 내 직분을 이행하고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직분자들을 준비시키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죽어 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음으로써 목회적 보살핌을 수행하고; 개교회의 의사결정에서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선도하며, 인류 전체 공동체 삶에 대한 관심과 봉사를 함양하고, 제반 치리의 책임에 참여한다. 그들은 집사들과 더불어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사역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목회적 임무에 더하여, 그들은 당회 보다 상회인 협의회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관계에서도 교회의 사역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

#### a. 취임된 목회 관계

취임된 목회관계는 담임목사와 동사목사와 부목사를 말한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관계로 취임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무기한 또는 개교회와 협의 하에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기간이 될 수 있다. 말씀의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결정될 때 개교회가 목사를 추가하여 청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가된 목사들을 동사목사나 부목사라 부른다. 개교회에서 각 목사들에게 할당된 직무와 개교회와 목사들 간의 관계는 당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노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개교회에 2명의 목사가 동사목사로 있을 때, 그 중 한 명과의 목회관계가 해소되면 남은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개교회와 부목사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부목사들은 보통 같은 교회에서 함께 일해온 담임목사의 차기 담임목사가 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 b. 임시 목회 관계

임시 목회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은 관계이며, 공식 청빙이나 취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거나 담임목사가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당회가 노회의 승인을 얻어

가르치는 장로나 후보생이나 치리하는 장로를 임시 목회관계로 구할 수 있다. 어떠한 공식 청빙을 하거나 공식 취임이 거행되어서는 안 된다.

임시 목회관계의 칭호와 임기는 노회가 결정한다.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사람은 12 개월을 넘지 않은 특정 기간 청빙되며, 이 관계는 노회의 승낙 하에 임기를 갱신할 수 있다. 임시 목회관계로 고용된 가르치는 목사들은 보통 차기 취임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가 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 c. 예외사항

노회는, 선교 전략상 현재 부목사로 청빙된 가르치는 장로에게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자격을 허용하거나, 임시 목회관계로 고용된 가르치는 장로에게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나 부목사 자격을 허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자격을 허용하는 노회는 노회의 출석 투표자와 투표의 3/4 표결에 의해 그러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 2.0505 타 교단의 목사의 이전

a.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가 노회의 관할권에서 사역하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청빙 받을 때, 그 노회는 의 헌법적 조건들이 충족된 후, 그 목사의 이전 안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목사들은 노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증과 무흠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본 장로교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학문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G-2.0607 과 G-2.0610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될 것이다:

(1) 이민자들의 친교와 이민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이민그룹에 대한 선교 전략상 이민교회 목사의 노회 입회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노회가 결정할 경우, 후보생의 노회 입회에 요구되는 교육적 배경이 그 이민목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이민목사가 어느 교단의 목사로서 무흠 회원권을 제시할 경우 노회가 그의 안수를 인정하고 그를 노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그 이민목사가 노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데 필수적이고 유익할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개혁신교회의 안수 목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노회의 3 분지 2 표결에 의해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안수시험 전부나 일부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b. 등록할 때 그 목사는 이전에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어느/모든 타 기독교 교단의 회원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를 노회에 제시해야 한다.

### 2.0506 사역하는 기간동안 노회의 임시 회원권

노회는,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의 인정된 목회에서 현재 임시로 사역하고 있거나, 협정신조(Formula of Agreement) 조항에 따라 취임 관계에 있고 (G-5.0202), 그 목사가 노회의 자체적인 규칙에 의해 세워진 그러한 사역의 준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그러한 목사를 입적할 수 있다.

### 2.0507 가르치는 장로로서 사역 해제

D-10.0101 and D-10.0201 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죄목으로도 피소된 적이 없는 무흠 회원권의 가르치는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직제사역 수행에서 해제되기 청원할 때,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당해 명부에서 삭제하고, 당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일반 교인 자격으로 남게 한다. 직제사역 수행으로부터 해제는 그 목회에 관한 모든 직무의 정지를 의무화 한다. 가르치는 장로에게 속하는 호칭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직무 해제된 사람은 개교회의 모든 활동 교인들이 분담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본문항에 의거하여 해제되었으나 나중에 가르치는 장로로서 직제사역의 복원을 원할 경우, 해제를 허락한 동일한 노회에 복원 신청을 내야 한다. 그 노회의 승인을 받을 때 안수질문을 통해 재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회원권 자격을 부여하는 노회에서 목회를 재개함으로써, 재안수를 받지 않고 가르치는 장로로서 직제사역 수행이 복원된다.

### 2.0508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

노회가 어느 가르치는 장로의 목회활동이 더 이상 인정된 목회가 아니라고 결정할 때, 또는 그가 보통회원의 기준(G-2.0503b)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예 은퇴자가 아니라고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회의에서 고려되는 사안이 그/그녀와 노회관계에 관한 사안인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노회서기가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가르치는 장로가 인준된 목회 기준이나 보통회원 기준을 3년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회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또한 당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일반교인 자격으로 남게 한다.

### 2.0509 관할권의 포기선언

가르치는 장로(또는 권한대행자)가 노회서기에게 본 교단 관할권의 포기서를 제출할 때 그 포기선언서는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가르치는 장로가 노회가 불승인하는 목회를 고집하여 행할 때, 그 노회는 그 가르치는 장로와 상담하고, 그런 다음 노회의 불승인을 정식 통고한다. 상담의 기회를 주고 불승인을 서면으로 정식 통고한 다음에도 그 가르치는 장로가 문제된 사역을 고집한다면, 노회는 그이나 그녀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포기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어느 가르치는 장로가 타교단에서 어떤 종류이건 간에 회원권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속할 때,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가르치는 장로를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관할권의 포기는 그 가르치는 장로를 회원권과 직제사역에서 제명시키고 그 목회직 수행을 종결시킨다. 포기선언은 당회서기에 의해 차기 당회 모임에서 보고되어야 하고, 그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이나 그녀의 이름은 당해 등록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타 행정적 조치들이 장로교 헌법이 의무화하는 대로 취해져야 한다.

## G-2.06 목회 준비

### 2.0601 준비의 성격과 목적

가르치는 장로로서 안수를 앞두고, 이들이 노회 지도 하에서 직분 준비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회는 가르치는 장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당회와 지교회와 계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야 한다.

### 2.0602 시간 요구사항

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지원자는 후원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6개월간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그 후원 교회의 당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망과 후보 단계는 최소한 2년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1년은 후보생으로 있어야 한다.

### 2.0603 지망의 목적

지망단계의 취지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직제사역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스스로 믿는 지망생들과 교회에게 공동으로 그 부름을 탐사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노회로 하여금 그 지망생의 직제사역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하게 하고 그 이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604 후보의 목적

후보단계의 취지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후보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일은 노회의 지원과 지도를 통해, 그리고 목사안수를 요구하는 부름에 대한 후보생의 적성과 준비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 2.0605 감독

지망이나 후보 단계의 기간에 그 개인은 계속적으로 그이나 그녀가 속한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당회의 배려와 권징에 종속된다. 목회 준비와 관련 사안에 있어서 그 개인은 계약관계의 맥락에서 노회의 감독 하에 들어간다.

## 2.0606 계약관계의 봉사

지망생과 후보생은 돌봄에 대한 노회의 승락을 받아 교회에서 지도 사역의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이전에 치리 장로로서 안수받지 않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어느 누구도 당회 사회를 맡거나 성례전을 거행하거나 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다. 이전에 치리 장로로서 안수 받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의 청에 의해 주의 만찬에서 집례할 수 있도록 노회가 허가할 수 있다.

## 2.0607 봉사를 위한 최종 평가와 절충

후보생은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장로로서 사역 절충에 들어가는 안된다. 노회가 청빙 대기 중의 후보생에게 목사고시 준비성을 인정하고 고시자격을 부여할 때,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가르치는 장로로서 직제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후보생의 지혜와 믿음의 성숙성, 지도자 자질, 연민의 마음, 정직성의 평판, 건전한 판단력 소유;
- b. 지역에서 인가받은 칼리지나 유니버시티의 졸업장과 만족할 만한 성적증명서 제출;
- c. 신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인가를 받았고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히브리어과목, 헬라어 과목,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해석을 포함한 신학교과과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제출 - 전 과목에서 만족할만한 학점을 획득했어야 함. 그리고 졸업장이나 졸업계획서 제출;
- d. 총회의 승인을 받은 표준 안수고시(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과목의 시험 답안지 제출과 만족할 만한 성적 취득. 그러한 고시는 노회가 창설한 기관에 의해 준비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 2.0608 관계의 이전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요청이 있고 당회와 노회의 승인을 받을 때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계약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 2.0609 관계의 취소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와 노회와 협의한 후 계약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노회는 또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지망생이나 후보생 명부에서 그 개인의 이름을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결정과 그 사유를 당회와 그 개인에게 보고하며, 적절할 경우, 그 개인이 등록되어 있는 그 교육기관에도 보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취하기 전에, 노회나 노회의 위임을 받은 기구는 후보생이나 지망생에게 제명 제안의 심리 기회를 주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한다.

**2.0610 특례**

노회는 G-2.06 에 있는 안수의 요구사항의 어느 것이라도 3/4 표결에 의해 면제해줄 수 있다(G-2.0607d 요구사항은 제외). 만일 노회가 후보생에게 G-2.0607d 의 요구사항을 의무화 하지 않을 만한 충분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표준 안수시험 분야를 통해 목회 후보생의 준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2/3 표결로 승인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또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노회에도 전달되어야 한다.

**G-2.07 안수****2.0701 안수**

가르치는 장로로서 직제사역의 안수는 노회를 통해 수행되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며, 그 사람을 직제사역의 직분에 선별한다. 그러한 사람은 돌봄에 관한 노회의 안수 요건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개교회 섬김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본 교단의 다른 선교 사역 - 후보생과 노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름 - 을 받아들여야 한다.

**2.0702 안수 장소**

목사 후보생에게 청빙을 위임하는 노회가 대개 그 후보생을 심사하고 안수하며 취임시킨다.

**2.0703 안수 예식**

예배 의식은 예배모범 W-4.4000 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2.0704 안수 기록**

청빙 노회는, 새 가르치는 장로가 안수질문에서 의무를 떠맡기로 서약한 서면확인서와 더불어 안수와 취임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가르치는 장로를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다. 노회 서기는 이러한 결정을 총회사무처와 양육 노회에게, 그리고 후보생이 이전에 회원이었던 지교회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G-2.08 청빙과 취임****2.0801 담임목사 공석**

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비어있을 때, 또는 노회가 기존의 목회 관계 해소의 발효일을 승인한 다음에, 개교회는 노회의 지도와 승낙을 받으면서 다음의 방법으로 목사 공석을 메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802 목사청빙위원회 선출**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개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선출한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개교회에 의해 목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목사 한 명을 지명하는 일이다.

**2.0803 청빙 절차**

노회의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담임목사청빙위원회는 청빙 고려 대상자들의 장점과 적합성과 청빙 수락 가능성에 대해 노회 자문을 받고 이를 숙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공동의회 보고를 위한 사전 절차를 통과한 다음에 당회에 통보 해야 하며,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2.0804 청빙 조건**

청빙 조건은 항상 그 당시 효력이 있는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능가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의 청빙조건을 매년 검토해야 하고, 당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수정안이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 제안을 공동의회 결의(G-1.0501)에 부쳐야 한다. 청빙에는 미국장로교(PCUSA) 복리후생제도 가입이 포함되어야 하고, 연금 및 의료보험혜택이나 총회 승인을 받은 후행 플랜이 포함되어야 한다.

**2.0805 취임예식**

공동의회와 노회와 가르치는 장로(또는 후보생)가 모두 영구적 목회직이나 임명 목사직의 청빙에 동의하였을 때, 노회는 취임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청빙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취임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취임 예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 의식은 예배모범 W-4.4000 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9 목회관계의 해소****2.0901 공동의회**

취임 목회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관계해소 절차의 개시를 가르치는 장로가 한 것이든 개교회나 노회가 한 것이든 간에, 항상 공동의회에서 그 사안을 심의하고 해소에 동의하든지 동의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2.0902 담임목사,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가 요청할 때**

목사나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가 목회관계 해소를 노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 목사는 또 자신의 의사를 당회에 진술해야 한다.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그 요청에 대응하고 노회에 제안을 할 수 있다. 개교회가 관계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반드시 교회에서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왜 노회가 목회관계 해소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한다. 교회 대표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요청이 허가되고 그 목회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2.0903 개교회가 요청할 때**

개교회에서 목회관계 해소를 원할 경우에는, 상기의 G-2.0902 조항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인들이 담임목사와 관계해소를 추구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요청할 때, 당회는 동

회의를 소집하고, 동 회의를 진행할 사회자를 임명해주도록 노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관계해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왜 노회가 그 관계를 해소시켜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노회가 목사에게 직접 청문해야 한다. 목사가 출두하지 않거나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 2.0904 노회의 결정

노회가 개교회에서 보고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노회는 목사와 당회, 그리고 개교회와 협의한 후에 말씀에 의해 교회의 선교가 목회관계 해소를 단호히 요구한다고 판정할 경우,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2.0905 초청에 의해서만 집례

목회관계가 해소된 후, 전임의 담임목사들과 부목사들은 당회장의 초청을 받지 않고서는 이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예식에서 집례 할 수 없다.

### G-2.10 특정한 목회적 섬김에 치리장로 파송

#### 2.1001 기능

노회가 당회나 기타 책임소관 위원회와 협의한 후, 선교 전략상 필요성이 결정될 때, 노회지정의 제한된 목회적 섬김을 하도록 치리장로의 파송을 허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임명된 치리장로는 노회의 인정된 목회를 섬기도록 파송될 수 있다. 그러한 섬김에의 파송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갱신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직무의 권한과 책임사항과 임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파송에 관하여, 노회는 개교회에 파송한 치리장로로 하여금 당회 사회를 보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주법이 허락하는 곳에서 결혼을 주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파송에도 임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이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노회는 파송에 대해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2.1002 훈련과 시험 및 파송

G-2.1001 조항의 조건 하에서 봉사하기를 추구하는 치리장로는 특정한 파송에 적절하다고 노회가 결정하는 그러한 준비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치리장로는 개인 신앙과 파송 받기 원하는 동기에 대해 그리고 노회가 결정한 교육 분야들에 대해 노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파송을 받았으나 그 이후 명시된 목회를 그만 둔 치리장로는 계속해서 후보 사역자로서 명단에 남을 수 있으나, 노회에 의해 다시 지교회나 목회로 노회의 파송을 받기 때까지는 G-2.1001 조항에 명시된 직분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 2.1003 파송 예식

치리장로가 앞서 언급된 봉사를 제공하고, 개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노회가 만족할 때, 노회는 W-4.4000 에 명시된 질문들을 사용하여 그 치리장로를 노회 임명의 목회 업무에 파송해야 한다.

### 2.1004 감독

G-2.1001 조항의 조건에 의해 파송받은 치리장로는 노회의 감독 하에 사역해야 한다. 노회는 충분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느 때라도 그 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치리장로에게 선도자겸 감독자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 G-2.11 유자격 교회 사역

### 2.1101 유자격 교회 사역의 형태

각 사람들은 개체교회와 협의회, 그리고 교단 관계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사역을 통해 개인의 신앙을 반영시키며, 헌신을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려고 힘쓴다. 당회와 노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문서(handbook)와 전국 인증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인증 요건들을 이들이 충족하거나,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전국적인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서를 취득한 이들의 명단은 총회 산하의 적절한 기관으로 보내져야 하고, 거기서 총회사무처와 이들이 사역하는 노회 지정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2.1102 노회와 기독교 교육

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자격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 기금이 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인정서 교부시에 인정예식을 거행하여 인정서를 획득한 이들의 능력과 헌신을 공식 추인해야 한다. 노회는 인증받은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2.1103 Christian Educators

#### a. 기술과 훈련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은 개 교회나 협의회 교육목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서해석, 개혁주의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성개발, 신앙개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천, 미국장로교(PCUSA)의 정치제도와 프로그램 및 선교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b. 노회의 책임

노회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과 유자격 기독교 부교육자들의 보수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확립하고, 노회의 목회감독 영역(G-3.0307)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노회는 노회 관할권의 교육목회를 섬기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이 그들 임기 중에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허가하고, 치리장로인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에게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허가할 수 있다.

## 제 3 장 교회 협의회

### G-3.01 협의회에 관한 일반원칙

#### 3.0101 교회일치 표상으로서 협의회

협의회를 통한 교회의 상호 연결은 교회일치의 표상이다. 미국장로교의 개교회들은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는 일에 개체 교회들이 공동체 안팎으로 상호 나눔을 갖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증거의 부름은 모든 신자들의 사역이다. 교회의 협의회들의 특정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부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치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증언이 전체 교회를 강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미국장로교(PCUSA)는 협의회들에 의해 치리되며, 협의회들은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된다(F-3.0202). 이러한 협의회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협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를 이루며,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서로 공유한다. 협의회들은 서로 별개적이거나 어느 한 협의회들의 행위가 전체 교회의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각 협의회 관할지역은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한정적이고, 각 협의회들의 행동은 차상급 협의회들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이 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권한들은 노회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다.

교회 협의회들은, 개체 교회들이 전체교회로서 그리스도 선교에 보다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참되게 들려질 수 있게 제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제공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이 되는 이들을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앞으로 다가올 천상의 만찬을 고대하면서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 현재에서 결속을 다짐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선교에 헌신한다.

### 3.0102 교회 관할권

본 교단의 협의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으로만, 진리와 봉사, 규례와 권징의 관계에서 그의 뜻을 선포하며 복종하는 관계에서만 교회적 관할권을 갖는다. 협의회들은 신앙 선언의 틀을 만들고, 교리의 오류와 삶의 부도덕성을 반대하는 진리의 증언을 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이슈를 해소하고, 양심 문제에서 조언하며, 그들 앞에 제기된 이슈들을 *규례서*의 조항에 의거하여 적절히 결정을 내린다. 이들은 예배모범에 의거한 성례전의 집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들은 교회의 예배와 선교, 정치와 권징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수립할 권한이 있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의 평화와 순결과 일치와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이들은 각 관할권에서 교회의 리더십과 지도와 치리를 책임진다.

### 3.0103 참여와 대표성

교회의 협의회들은 교회 회원권의 풍부한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며, 의사결정과 고용정책에 완전 참여와 완전 대표접근권을 마련해야 한다(F-1.0403). 이러한 결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들은 사역의 은사와 요구사항(G-2.0104)에 대해, 그리고 개교회와 협의회 인원들의 제직원 선출권(F-3.0106)에 대해,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각 협의회는 포용성과 대표성에 관한 교단의 결단이 자체적 기구에서 실행되도록 고무하고 심의하는 절차와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당회보다 상급의 협의회들은 자체적인 규칙에 의해 위원회나 기구를 수립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일치와 다양성 원칙의 실행에 관해 협의회에 권고하고, 지도자 다양성을 주창하며, 일치와 다양성 원칙(F-1.0403)과 일치하는 인사채용에 관한 협의회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병합되거나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3.0104 제직원

개체교회의 담임목사가 그 교회 당회의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동사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두 목사 다 당회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특정 회의의 의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 그/그녀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가르치는 장로나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사회자로 청해야 한다. 취임된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나 취임 목사가 다른 사회자를 초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회에서 사회자를 조달해야 한다.

의장은 질서유지와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한다. 그/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폐회해야 한다.

당회보다 상위에 있는 각 협의회는 그 협의회가 결정한 임기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된 당시, 의장은 그 협의회에 계속회원이거나 총대여야 한다. 그들은 재임기간 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는 의장 부재시에 누가 회의를 주재할 것인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각 협의회는 서기를 선출해야 하며, 그 서기는 협의회 의사활동을 기록하고, 회원 명부에 따라 출석을 점검하며, 기록을 보존하고, 교회의 다른 협의회에 요구가 있을 때 필요 부분의 기록을 발체하여 제공해야 한다. 서기가 대조 확인한 발체 기록은 교회의 어느 협의회에서나 공인 증거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회서기는 당회가 결정한 임기 동안 시무하도록 당회에 의해 선출된 치리장로라야 한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서기는 지정서기(stated clerk)라 칭한다. 그들은 협의회가 결정한 임기로 협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반드시 치리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라야 한다. 협의회 임원들은 협의회 필요에 의해 협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3.0105 회의

협의회는 회의를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본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회의 진행은 *만국공통회의법(로버트 회의법)*의 최신판에 의거한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합의한 대로 분별의 과정을 심의에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결정이 협의회에 의해 내려질 때, 그 결정에 반대 투표를 한 회원은 반대나 항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나 항의의 제기가 사법절차를 개시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a. 반대란 협의회에 결정에 불찬성을 표명하는 선언이다. 반대는 그 결정이 일어난 특정한 회의의 개회중에 제기되어야 한다. 반대하는 회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b. 항의란 서면 선언을 말하며, 여기에 항의 사유들이 제기되며, 협의회에 결정이 변칙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러한 함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항의의 서면통보는 항의가 발생한 협의회에 특정 회의의 개회 중에, 그 회의가 폐회되기 전에 그 서기에서 접수시켜야 한다. 그 항의가 예의있는 정중한 언어로 표명되었을 경우, 동 회의의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여기에 그 협의회에 의해 준비된 답변이 수반될 수 있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 3.0106 선교 행정

선교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형태와 구조를 결정한다. 행정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절차이다. 행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교회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킨다.

당회보다 상위에 있는 협의회들은 자문서(advisory handbooks)에 편찬될 정책과 절차의 모범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범들은 헌법이 의무화하는 실천사항들을 명확하게 하지만, 특정한 실행은 협의회에게 맡겨진다. 그러한 자문서는 특정 협의회 사역을 강화하거나 확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각 협의회에서 자체 협의회와 선교형태와 지침을 명시하는 행정운영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그 과제 국면은 협의회가 합당하다고 간주하는 기구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러한 기구는 협의회와 보고의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 협의회들이 상호간에 책임과 권리 및 권한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선교 행정은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을 나타낸다(F-3.0203). 자체 회원들과 피선 대의원들을 통하여 하회 협의회들은 상회 협의회 사역 계획과 행정에 참여하고, 선교·예산·인력관리·공정고용정책·적절한 보수 문제에 관한 기구 간의 협의에 참여한다.

선교의 자금공급은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을 나타낸다. 교단의 어느 일부에서 전체 교회 선교를 위한 청지기정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일치와 상호의존을 약화시킨다. 모든 선교 자금공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교회가 세상에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교회의 하나님 선교의 증거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당회보다 높은 각 협의회는 행정직원을 포함한 운영비의 예산을 작성해야 하며, 그 관할권 내 지교회들이 내는 교인수에 근거한 상회비로서 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기금을 모금할 책임 뿐만 아니라, 교인 수에 근거한 상회비를 모금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적시 송달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자체 구역내의 당회들에게 교인수별로 상회비를 할당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당회의 자선금 할당 권한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 3.0107 기록

각 협의회는 자체 절차들에 대한 전 기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록과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록은 동 협의회나 그 법적 후계자에게 속하는 영구 재산이다. 어느 협의회가 존속하지 않게 될 때, 그 기록들은 종속 이전에 속해있던 관할구역의 차상급 협의회 재산이 된다. 각 협의회 서기는 자체 기록을 장로교역사협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나 미국장로교(PCUSA) 신학교 내의 항온항습 환경에 영구보존하는 문제를 반드시 자체 기관에 건의해야 한다.

### 3.0108 행정적 검토

상회 협의회는 하회 협의회 사역을 다음의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

## a. 일반 행정적 검토

각 협의회는 모임의 빈도에 따라 1 년이나 2 년에 한 번씩, 조직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제직원들과 관할 내의 하회 협의회들이 취한 절차들과 결정들에 대해 검토한다. 상회 협의회는 하회 협의회가 취한 절차들을 검열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헌법에 일치되게 이루어졌는지, 신중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전체교회의 선교에 충실했는지 확정해야 한다. 또한, 상회 협의회들의 합법적인 명령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 b. 특별 행정적 검토

상회 협의회가 하회 협의회들의 변칙이나 비행 혐의를 알게 되는 경우 어느 때라도, 그 하회 협의회에게 어떠한 기록이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c. 지시된 응답

합치성의 이슈가 아니라고 확정되었다면, 상회 협의회는 하회 협의회에게 재고하여 교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행정적 검토 외에, 권징조례에 기술된 대로 사법절차를 개시하여 검토와 교정을 구할 수도 있다.

## 3.0109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협의회는 자체 규칙에 의해 교회 선교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그러한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협의회와 협의 하에 다른 협의회와 공동으로 그러한 기구를 창설할 수도 있다. 협의회는 그러한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때, 본 헌법의 규정(F-1.0403, G-3.0103)과 의거하여 ‘다양성 안의 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숙고한 권장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임명받은 협의회에 전면 보고를 해야 하고, 권장안들은 협의회 결의를 요구한다. 당회보다 높은 협의회 위원회들은 가르치는 장로들과 개교회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 구성의 적어도 절반 수가 교인들이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안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위임 협의회는 그 전권위원회에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 그리고 권한의 제한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협의회는 두 종류의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a. 사법전권위원회

사법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따라 협의회 절차의 사례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개교회의 사법전권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당회보다 높은 각 협의회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D-5.0000 참조).

b. 행정전권위원회

행정전권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교회의 사법절차를 포함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속고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단, 그들이 위임받은 책임을 수행하는 중에 협의회 사법결정을 요하는 문제를 발견할 경우에는 임무를 부여한 그 협의회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행정전권위원회에 위임된 기능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1) (당회에 의해) 치리장로와 집사의 안수와 취임, 회원을 받아들이고 제명하는 일, 개체교회내의 조직을 방문하여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일;
- (2) (노회에 의해) 가르치는 장로들의 안수와 취임;
- (3) (노회에 의해) 노회 입회를 추구하는 가르치는 장로들을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청빙조건과 안수와 취임 전권위원회를 승인하는 일; 후보생의 돌봄을 맡는 일;
- (4) (노회에 의해) 이민교회를 발전시키고, 새 교회를 조직하며, 개교회들의 합병, 연합교회나 연방교회를 형성 하는 일(G-5.05);
- (5)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 의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직접 관할의 협의회, 개교회, 기관들을 방문하여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 단 목회관계 해소는 위임 처리회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한,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이의 권한이 없다(G-2.0701);
- (6) (모든 협의회에 의해) 피소자의 사망이나 관할권 포기에 의해 피소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성희롱 혐의를 받은 그 피소자에 대한 목회적 조사(D-10.0401c)를 하는 일; 그러한 조사가 사법절차로 이해되어서 아니 되며, 고발에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고, 그 위원회를 임명한 협의회에 적절한 권장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회나 대회, 또는 총회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은 가능한 거의 동수(同數)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 수행에 충분한 숫자라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임명한 협의회에 의해 확정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과반수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D-5.0204 조항으로 제한될 때는 예외).

당회의 전권위원회는 최소한 2 명의 가르치는 장로와 1 명의 가르치는 장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장로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교회와 취임 목회관계이거나 임시 목회관계일 수 있으며, 또는 목회사역에 파송된 치리장로일 수도 있다.

전권위원회는 절차의 전기록을 보관하고, 이 기록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협의회 기록에 병합되도록 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행동조치는 동 위원회를 발족시킨 협의회 행동조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 임무를 할당 받을 수 있고, 그 임무는 위원회 보고로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동 기구에게 위임한 협의회 서기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서기는 다음 정기회의 때 이를 그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에서 결정들을 수정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전권위원회의 그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특정한 기구나 협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전권위원회가 발족되었을 경우, 전권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의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명정대한 공지를 보내어서 그 쟁점에 대해 심리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0110 행정 직원

당회보다 높은 협의회는 동 조직의 선교에 필요한 인원을 ‘다양성 안의 일치’ 원칙 (F-1.0403)에 의거하여 채용할 수 있다. 협의회들은 차상급 협의회와 협의 하에, 조직의 선교에 필요한 직원을 공유할 수 있다. 협의회는 행정운영지침서(G-3.0106)에 운영인력 선발 규정, 기타 인사 채용 절차와 직책의 설명, 업무평가방식과 고용해제 방식의 규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3.0111 공천 절차

당회보다 높은 모든 협의회는 선출이 요구되는 모든 직책에 대한 직분자 지명 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 절차는 협의회 구성자 기반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기구의 공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양성 안의 일치’ (F-1.0403)에 대한 교회의 결단에 순응해야 한다.

#### 3.0112 보험

각 협의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임명 임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산보험과 책임보험(liability)에 가입해야 한다.

#### 3.0113 재정

각 협의회는 구역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채택해야 한다.

모든 재정장부와 기록은 1 년에 한 번씩 공인계리사나 공인계리회사 계리절차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철저한 재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자들은 회계(들)과 친척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본 항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고, 전문 회계업계에서 이해되는 특정감사의 절차나 실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 G-3.02 당회

#### 3.0201 구성과 책임

당회는 개교회에 대한 협의회이다. 당회는 취임된 담임목사들과 부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활동 치리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당회의 전 회원들은 투표권이 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야 하며, 담임목사나 당회장 대리가 없이는 당회가 소집될 수 없다. 취임된 담임목사가 없거나 취임 목사가 다른 사회자를 초대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노회는 당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노회는 당회장이 공석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회에 나올 수 없을 때 규칙에 의해 당회장을 제공해야 한다.

당회는 개교회를 치리하는 책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활동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을 안내하는 책임을 진다. 개교회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개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가운데, 당회는 교회의 표징들, 즉 장로교인들과 개혁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동일시해온 신앙각서(F-1.0303)와 교회의 6 대목표(F-1.0304)를 앞에 내세운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에 비추어 당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참되게 들려질 수 있게 제공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개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영적양육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에 의해, 또는 준비되고 허가 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말씀의 설교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헌신적 제자직에 들어오도록 부름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와 세계에 전달하려는 정규적 노력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증거와 일치되게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목회를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주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를 증거하는 에큐메니칼 노력을 개시하고 응답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제공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최소한 3 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일, 예배모범의 원칙에 일치되게 세례를 적절하게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 성례전이 은사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례전으로 상징되는 일치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도록 개교회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회원의 입회와 퇴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활동회원 명단을 검토하는 일; 회원책임을 소홀히 하는 이들과 상담하는 일; 양육과 교육과 친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치리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한 훈련, 심사, 안수 및 취임의 과제; 관대의 덕과 개인/재정 자원의 충실한 청지기 정신을 장려하는 일; 개교회의 물적 재산이 선교사역의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 개교회 집사와 재단이사 및 모든 기구의 사역을 지도하는 일; 교회의 행정인사 채용; 전체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개교회를 선도하는 일; 교리의 오류나 개교회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경고와 반대증언하는 일; 그리고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202 타 협의회와의 관계

당회는 타 협의회에 참여를 통해 전체 교회의 생활에 참여하는 특정한 책임을 가진다. 특별히 다음의 일을 당회가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 a. 개교회의 치리장로들을 최소한 1년 임기의 노회 총대로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것;
- b. 교회의 의사결정에 포용성과 공정대표 원칙을 반영시키면서, 개교회의 장로들이 대회와 총회 대의원 선출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회에 공천하고 노회 위원회나 전권위원에서 봉사하는 것;(F-1.0403)
- c.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지침과 통지내용이 숙고되는지, 강제적 결의사항들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 d. 노회 대표가 방문할 때 환영하는 일;
- e. 교회 선교임무에 대해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노회에 제안하거나, 또는 노회를 통해서 대회나 총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
- f. 자발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노회와 총회가 요청하는 재정지원과 통계자료와 기타자료를 그 처리회들의 요구사항에 일치되게 보내는 일.

### 3.0203 회의

당회는 정기회의를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 당회장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당회원 2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특별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특별회의에서 처리될 의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회의소집 안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모든 특별회의는 합리적인 사유가 공지되어야 한다. 당회는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도 소집되어야 한다. 당회는 회의 정족수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정족수에 당회장과 특정 수의 치리 장로들 또는 당회에서 시무 중인 특정 비율의 치리 장로들이 포함된다.

### 3.0204 회의록과 기록

당회 회의록은 G-3.0107 조항에 종속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와 그리고 집사와 재단 이사들과의 합동회의 회의록을 포함해야 한다.

각 당회는 다음의 명부와 기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 a. 교인명부

세례자 명부, 활동교인 명부, 관련교인 명부는 G-1.0401, G-1.0402, G-1.0403 조항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사망하거나 타교회 회원권을 수락하거나 관할권 포기선언을 하는 즉시 해당교인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교인이 명부에서 삭제되기를 요청했거나 이사했거나 또는 교회 사역과 예배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2년간 중단했을 때, 당회는 해당교인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당회는 적극적인 참여에 돌아 오도록 교인들을 격려해야 하고, 회원의 비활동 사유에 의해 이름을 삭제하기 전에 서면 통보를 보내야 한다.

#### b. 기록부

당회에 의해 허가된 세례자 기록부, 치리장로들과 집사들의 기록부, 취임받은 담임목사들의 (취임식 날짜 포함) 기록부, 그 외에 당회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기록부들이 있어야 한다.

### 3.0205 재정

G-3.0113 에 기술된 책임사항들에 부가하여, 당회는 예산을 수립하고 개교회의 자선 분배망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 당회는 헌금을 기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헌금 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 의무가 있다. 당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의 전 내용을 교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회는 당회에서 결정한 임기로 회계를 선출하며, 회계의 업무를 당회가 감독하거나, 아니면 그 감독을 집사회나 재단이사회에 위임해야 한다. 교회의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회에게 최소한 1년에 한 번 보고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더 자주 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표준재무실행에 대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의 절차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a. 모든 헌금은 최소한 정식으로 임명된 2 인이나 충실의무 서약의 인물 1 인 의해 그 액수의 계수와 기록이 되어야 한다;

b. 모든 재정거래를 반영하는 재정장부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시기에 권한있는 교회 제직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c. 모든 재무활동은 당회나 재무감독 권한이 있는 기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보고가 연 1 회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 G-3.03 노회

#### 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구역 내에서 교회의 법인 표명을 하는 협의회이며, 그 구역 내의 모든 개교회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된다. 노회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가르치는 장로들과 치리장로들의 수가 동수(同數)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회는, 각 당회가 몇 명의 치리장로들을 노회 대표로 선출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설계하여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이 안은 각 당회에서 최소한 1 명의 노회대표 선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개교회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하고, F-1.0403 과 G-3.0103 에 나오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이 이행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노회 제직으로 선출된 치리장로는 시무기간 동안 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노회는 위원회나 전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치리장로들의 노회 입회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의 최소한 구성은 정당하게 조직된 10 개 당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10 명의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노회는 구역 전체의 교회치리를 책임지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활동들에 대해 개교회들이 세상 안에서 증거하는 일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책임지며, 이로써 모든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개교회들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가운데, 노회는 교회의 표징들(F-1.0302), 즉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동일시해온 신앙각서(F-1.0303),와 교회의 6 대목표(F-1.0304)를 앞에 내세운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에 비추어 노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참되게 들려질 수 있게 제공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회원들과 협의 하에 개교회를 조직·영입·합병·해산·해소하는 일; 담임목사 부재의 개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가르치는 장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지도하고 준비시키는 일; 교회의 삶과 선교사역이 확대되도록 노회구역 내에서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서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자 개발, 예배, 전도, 책임행정의 분야에서 개교회에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제공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노회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최소한 1 년에 한 번 거행하고, 이민그룹을 위한 새 교회 개척과 구역 내에서 기타 비종교적 단체 모임을 허가하며; 성례전 집행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될

때, 특정 치리장로가 주의 만찬을 집례하거나 거행하도록 권한을 주고 훈련하며; 성례전이 은사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개교회들과 노회 회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과 노회가 성례전으로 상징되는 일치 속에서 노회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치리장로들인 회원들의 안수, 입회, 퇴회, 취임, 제명, 권징; 제한된 목회사역에 치리장로들을 파송하는 일; 개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촉구하고 불화의 근원을 조사하는 일; 관대의 덕과 청지기정신 및 봉사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에서 개교회를 지원하는 일; 개교회의 선교사역 개발을 지원하고 전체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일; 해소된 개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맡고 그들에게 타교회로 이명증서를 허가하는 일;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리 오류와 부도덕 행위를 경고하고 반대 증언을 하는 일;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302 대회와 총회의 관계

노회는 다음의 분야에서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 a. 대회와 총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 b.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을 표준 안수고시의 채점자로 선출하는 일;
- c. 대회와 총회의 지침과 통지내용이 숙고되는지, 강제적 결의사항들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 d. 전체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대회나 총회에 제안하는 일;
- e. 대회와 총회가 의무화하는 통계자료나 기타자료를 그 치리회들에게 연례적으로 보내는 일.

### 3.0303 당회와 관계

노회는 가르치는 장로들과 구역 내 당회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폭넓은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개교회들의 사역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격려하고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지역 내에서 교회의 선교활동 전략을 개발하는 일;
- b. 새 개체교회의 위치를 감독하는 일, 회원들과 협의 하에 개체교회들의 이사, 분할, 해산, 해소를 감독하는 일;
- c. 노회내의 목회 청빙과 기타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에 대한 최저보수기준을 책정하는 일;
- d. 개교회 내의 보고된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회와 상담하는 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1) 보고된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회에 조언을 주며
- (2) 중재자로서 지원 제공을 제의하며
- (3) 당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당회가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 의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권징조례의 절차적 보호조항을 따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한다.

e. 당회가 그 직권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했을 때 원래 관할권을 떠맡는 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충분한 청문 기회를 당회에 허용한 후 노회는 개교회의 당회가 자체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당회의 전권을 가진 행정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실행이 중지된 기존 당회의 원관할권에 대해, 노회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이 전권위원회가 위임한다.

f. G-4.0206 에 명시된 물적재산에 관해 개교회가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구할 때 이를 숙고하고 결정 한다.

### 3.0304 회의와 정족수

노회는 정기 회의를 1 년에 최소한 2 회 열어야 하고, 대회의 지시에 따라 회집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일치되게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정족수를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그 수가 노회 회원들인 가르치는 장로 3 명과, 3 개의 다른 개교회 출신의 치리장로 총대 3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3.0305 회의록과 기록

노회의 회의록과 다른 공식 기록들은 노회의 재산이고, G-3.0108 명시된 대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노회 회의록과 기록의 보존 책임자는 노회지정의 서기이다.

### 3.0306 노회의 회원권

각 노회는 회원인 가르치는 장로를 결정하고, 그들이 관여할 목회사역을 인준한다. 이러한 일은 노회 구역 내의 목회 인준을 위해 당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기준이 그 지침이 되어야 한다(G-2.0503a).

노회는 노회 입회를 추구하는 각 가르치는 장로나 후보생을 그/그녀의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지, 신학과 성례전 및 본 교회 치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비추어 심사해야 한다.

노회는 가르치는 장로들을 교사로서, 복음전도사로서, 행정가로서, 기관목사로서, 그밖에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형태의 목회사역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목사들은 노회 허가를 받은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가르치는 장로는 그/그녀의 사역이 위치한 곳이나, 그/그녀의 거주하는 지역의 노회에 입회해야 한다.

노회의 승인을 받고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일하는 가르치는 장로는 그 사역을 하는 중, 그 교회의 회원권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본 교회의 노회 회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0307 담임목사, 상담자, 가르치는 장로들과 교인들의 조언자

노회는 구역 내 개교회들의 삶과 목회사역에 관해 통신교류의 문호를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

각 노회는, 담임목사이며 가르치는 장로들의 상담자로서, 목회사역에 파송받은 치리장로로서, 노회의 유자격 교육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과 절차; 개교회들과 가르치는 장로들과 목회사역에 파송받은 치리장로들과 유자격기독교 교육자들과의 노회관계를 촉진시키는 메커니즘과 절차;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노회를 대신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노회는 가르치는 장로가 되는 준비절차를 지도하고 촉진하고 감독하는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노회가 책임 맡고 있는 지망생들과 후보생들에 대한 감독, 가르치는 목사 회원들의 입회와 감독, 목회사역 청빙의 승인과 임시목회사역에 초대, 담임목사 없는 개교회의 감독, 관계해소, 회원의 퇴회, 회원 개교회들이나 가르치는 장로들과 근접한 관계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회는 그 권한을 노회 내의 임명 기구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들은 F-1.0403 에 기술된 '다양성 안의 일차'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동수(同數)의 치리장로들과 치리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권한 위임의 결과로서 수행된 모든 조치들은 노회의 차기 정기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 G-3.04 대회

### 3.0401 구성과 책임

대회는 보다 확대된 구역에서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중간급 협의회이다. 대회는 특정 지리적 관할내에 구성하는 노회 수가 3개 이하여서는 안 된다.

대회가 회집될 때, 노회에서 선발된 대표들로 대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각 노회에서 최소한 1명의 치리장로와 1명의 가르치는 목사를 대회 대표로 봉사하도록 선출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 대표 선출안과 F-1.0403 과 G-3.0103에 나오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대책안을 수립해야 하며, 두 계획안은 반드시 대회 산하의 노회들의 다수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각

노회의 대표들은 동수의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장이나 그 밖의 임원으로 선출된 각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할 때까지 대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대회는 전체지역을 통해 교회의 삶과 선교를 책임진다. 또한 개교회들의 증거사역 지원을 지역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노회의 목회와 선교 지원을 책임진다. 지역 전체적으로 교회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가운데, 대회는 교회의 표징들(F-1.0302), 즉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동일시해온 신앙각서(F-1.0303)와 교회의 6 대목표(F-1.0304)를 앞에 내세운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에 비추어 대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참되게 들려질 수 있게 제공한다.*

이러한 대회의 책임에는 노회와 연합하여, 대회 지역 내에서 총회의 대국적인 전략에 일치되게 교회 선교전략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일; 가르치는 장로들의 청빙, 안수 및 배치 관련건으로 요청 받을 때 회원 노회들을 지원하는 일; 노회들과 연합하여 대회 지역내에서 교회의 삶과 선교를 확대시킬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대회 지역 내에 있는 타교단 및 기관들과 선교적 합동결의를 촉진하는 일; 지역 내의 노회들 간에 그리고 노회들과 총회간의 통신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전체기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제공한다.*

이러한 책임으로서 대회의 회의와 관할 내의 기타 행사나 모임에서 주의 만찬 축하를 허가하는 일; 성례전이 은사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회들 사이에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고, 성례전 안에서 상징되는 일치 속에서 대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노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양육의 사역을 제공하는 일;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자 개발, 예배, 복음전도, 책임 행정의 분야에서 노회들에게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 노회들의 사역을 검토하는 일;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리 오류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반대증언을 하는 일; 그리고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402 총회와 관계

대회는 총회의 지침과 통지내용이 숙고되고 있는지, 강제적 결의사항들이 이행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전체교회의 선교에 공동관심사가 될 만한 방안들을 총회에 제안함으로써, 총회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 3.0403 노회와 관계

각 노회는 대회에 선출된 대의원들을 통해 대회의 책임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관할 노회 사역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며 그 책임분야는 다음과 같다:

- a. 노회들과 연합하여 선교달성 공동계획과 목표를 개발하고 노회에 격려와 지도를 제공하고 노회사역을 감독하는 일;
- b. 요청이 있을 때, 노회선교 임무의 촉진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 c. 새 노회를 조직하고, 이전에 존재하던 노회들/또는 일부 노회를 분할이나 연합,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하며, 기존 노회들의 동의를 얻어 비(非)지역적 노회를 창설하고 총회의 승인에 종속시키는 일, 또는 민중그룹이나 이민교회의 선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취하는 일. 그러한 노회의 창설은 G-3.0301 요구사항과 합치 되어야 하며, 창설될 지역 관할의 대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3.0404 기능 축소

대회는 소속 노회들의 2/3 다수표결에 의해 자체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기능이 사법절차의 규정 이하로 축소될 수 없고, 노회사역에 대한 행정검토 이하로 축소될 수 없다(G-3.0401c). 그러한 대회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회집되어야 하며, 대회의 소집 목적은 예산을 마련하고,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상임사법전권위원회와 행정전권위원회 결정을 기록에 등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회를 구성하는 노회들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대회의 타 기능들을 상호 합의에 의해 스스로 떠맡아야 한다.

## 3.0405 회의와 정족수

대회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총회의 지시에 따라 회집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정족수를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세(3) 노회를 대표하거나 회원노회 1/3 을 대표하는(보다 큰 수 선택) 동수의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3.0406 회의록과 기록

대회는 그 행정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기록을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 전체적인 검열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회는 회원 노회의 숫자에 대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G-3.05 총회****3.0501 구성과 책임**

총회는 전체교회의 협의회이며, 미국장로교회(PCUSA)의 대회들과 노회들과 당회들의 일치성을 반영한다. 총회는 노회에 의해 선출된 동수의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대(총회대의원)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F-1.0403, G-3.0103) 반영하는 가운데 다음 비율로 선출되어야 한다:

회원 8,000 명 이하,	장로 1 명, 가르치는 장로 1 명
8,001-16,000	치리장로 2 명, 가르치는 장로 2 명
16,001-24,000	치리장로 3 명, 가르치는 장로 3 명
24,001-32,000	치리장로 4 명, 가르치는 장로 4 명
32,001-40,000	치리장로 5 명, 가르치는 장로 5 명
40,001-48,000	치리장로 6 명, 가르치는 장로 6 명
48,001 명 또는 그 이상,	치리장로 7 명, 가르치는 장로 7 명

선출된 각 의장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할 때까지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총회는 전체 교회가 믿음과 소망,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모든 개교회들과 모든 협의회들의 일치의 결속, 공동체 결속, 선교의 결속으로 이루어진다. 전체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가운데, 총회는 교회의 표징들(F-1.0302), 즉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동일시해온 신앙각서(F-1.0303)와 교회의 6 대목표(F-1.0304)를 앞에 내세운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에 비추어 총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게 제공한다.* 이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즉 교회의 종합적 선교전략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 타 교단과 에큐메니컬 관계와 유대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G-5.02 와 G-5.03 조항에 해당할 경우, 관할권 내에서 본 장로교 신앙과 규례와 일치되는 타교단과 연합하거나 영입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은총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성장과 양육을 도모할 그러한 선교 인원의 임명과 파송 및 지원을 하는 일이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제공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즉 총회 회의와 관할 내의 다른 행사나 모임에서 주의 만찬 집례를 허가하는 일; 총회의 권한 대행자들이 참석하는 에큐메니컬 모임에서 주의 만찬 집례에 참가를 허가하는 일;

그리고 성례전이 은사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전체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 성례전으로 상징되는 일치 속에서 교회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c.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즉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그러한 봉사과 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일; 공동 관심사안들을 전체교회에게 알리는 일;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리 오류와 부도덕성을 경고하고 반대증언하는 일; 노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양육의 업무를 제공하는 일; 선교와 예언적 증거, 지도자개발, 예배와 복음전도, 그리고 책임행정 분야에서 노회에게 격려와 지도와 자원을 제공하는 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리와 선견 문제에 대해 분별하고 제시하여 교회와 세상을 감화시키고 도전하고 교화하는 일;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 본 헌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총회에 상정된 논쟁을 해결하고 제기된 사건에 대해 조언과 지시를 하는 일; *규례서*의 최신판을 권위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전체교회를 결속시키는 방식으로 G-6.02 조항에 의거하거나, 또는 *규례서*의 최신 해석의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가 교정사건이나 권징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 그리고 총회서기 사무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502 타 협의회와 관계

총회는 다음 문제에서 노회관계와 대회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 a. 헌법상의 책임을 수행하는 노회들과 대회들에 대해 조언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
- b. 대회의 사역을 감독하는 문제;
- c. 대회가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가운데 대회의 기록을 검토하는 문제;
- d. 새 대회를 신설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대회나 대회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연합하거나 기타 결속시키는 문제;
- e. 노회 또는 노회의 일부를 조직하거나 분할하거나 합치거나 결합하는 노회의 행위를 승낙하는 문제.

### 3.0503 회의와 정족수

총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총회 의장이나 의장의 불능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지정서기가 다음의 경우에서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즉 최소한 5개 대회에서 15개 이상의 노회를 대표하는, 최근 정기총회의 치리장로 총대들 중에서 최소한 1/4 인원과 가르치는 장로 총대들 중에서 최소한 1/4 인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총회의 총대들은 이전 정기총회의 총대들이나 총대 대리자들이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60 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소집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고된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의안도 토론될 수 없다.

총회의 정족수는 동수의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된 대의원 1 백명이어야 하며, 이들이 최소한 1/4 대회들에 속한 노회들을 대표해야 한다.

## 제 4 장

### 교회 권한과 국가 권한

#### G-4.01 법인조직과 재단이사들

##### 4.0101 법인조직과 권한

시민법이 허용될 때, 각 개교회는 법인조직을 설립하고 유지시켜야 한다. 법인조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에 의해 개별 재단이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재단이사들은 집사와 치리장로들의 직제사역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선출되어야 한다. 직분의 조건은 G-2.0404 조항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개교회를 대신하여 물적/개인 재산의 입수와 보유와 저당과 명의이전을 집행하는 일로써, 입수와 보유와 저당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구성된 공동의회 허가와 개교회 승인을 받은 후에만 재단이사들이 그러한 행위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의 소유권 증서를 받고 소유권을 집행하는 일; 재산의 소유권을 방어하는 일; 개교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상임 특별기금을 관리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당회 권한과 미국장로교(PCUSA) 헌법 조항에 종속된다. 재단이사들의 권한과 의무가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침해할 수 없다.

시민법으로 허용될 때, 각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법인조직을 설립하고 유지하며, 재단이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을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법인조직이나 개별 재단이사들은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즉, 협의회를 대신하여 협의회 지시 하에 물적/인적 재산을 받고 보유하고 저당하고 관리하고 명의이전을 한다.

##### 4.0102 법인조직의 회원

교회와 협의회 회원권 자격자들에게만 법인조직의 회원권 자격과 재단이사 피선거격을 부여해야 한다. 법인조직이 재단이사 선발 방식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교회 당회의 치리장로들이 시민법에 의해 자격자이며 법인조직의 재단이사들이 되어야 한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협의회 회원권 자격자들 가운데서 재단이사를 선발하는 자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G-4.02 교회 재산

##### 4.0201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재산

미국장로교와 교회 협의회들, 기구들, 그리고 개교회들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선교를 세상에서 이룩하는 도구이다.

4.0202 재산에 관한 결정

본 교회 내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검토되고, 교정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본 헌법의 조항들이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4.0203 신탁된 교회 재산

개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회를/에 의해 위하여 보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소유권이 법인조직에 있든지 재단이사(들)이나 비법인사단에 있든지 간에, 그 재산이 개교회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상회 협의회에 의해 사용되든지 간에, 또는 소득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두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된 재산이다.

4.0204 헌법에 위배된 재산의 사용

미국장로교의 어느 개교회가 자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이 헌법에 의거한 개교회로서 사용하기를 중지할 때, 그러한 재산은 반드시 노회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보유되거나 사용되거나 적용되거나 명의이전 되거나 매각되어야 한다.

4.0205 해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교회의 재산

개체교회가 노회에 의해 정식으로 해소되었을 때, 교인들이 분산되었거나 사역이 포기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러한 재산은 노회가 지시하고 제한하고 지정한 재산의 사용과 목적과 위탁으로 보유되거나 사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재산에 대해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한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4.0206 교회재산의 매각, 채무설정, 또는 임대

a. 개교회 재산의 매각 또는 채무설정

개교회는 어떠한 물적재산에 대해서도 매각하거나 저당권 설정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의 채무 설정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당회를 통해 노회의 서면 승낙을 전달 받지 않고는 채무나 조건에 종속된 부동산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b. 개교회 재산의 임대

개교회는 당회를 통해 노회의 서면 승낙을 전달 받지 않고는 예비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물적재산을 임대해서는 안 되며, 기타 다른 물적 재산에 대해 5년 이상 임대해서는 안 된다.

4.0207 분열 중인 개교회의 재산

개 교회와 미국장로교와의 관계는 노회 측의 헌법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관계절단될 수 있다(G-3.0303b). 개교회의 회원들 간에 균열이 생겨 노회가 화해로 이끌 수 없거나, 분열된

회중이 미국장로교단을 떠나지 않고 각각 다른 개교회로 남게 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 중 어느 분파가 그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면 미국장로교 내의 참된 교회로서 정체성은 노회에 의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내분 당시 어느 분파가 공동의회의 다수표를 받느냐에 종속되지 않는다.

#### 4.0208 특례

본 장의 조항들은 미국장로교의 전 개교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 미국남장로교회와 북미 연합장로교회가 미국장로교로 통합되기 전 교회헌법의 일부였던 유사한 조항에 종속되지 않았던 개교회에 대해서는, 미국장로교 통합이후 8년 기간 이내에 그 교회의 공동의회가 그 조항의 면제를 표결하였고 이에 대해 소속 노회에 통지하였을 경우, 본 장의 조항들이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를 표결한 개교회는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법인조직의 특혜를 행사하며, 또한 미국장로교로 통합되기 직전에 종속되었던 헌법 조항의 재산소유권을 행사한다. 이 본문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G-6.05).

### G-4.03 비밀유지와 특권

#### 4.0301 신뢰와 비밀유지

목회적 돌봄을 이행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칭하기도 함)과 제한 목회사역의 파송 치리장로들 (G-2.10)은 신임과 비밀유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들, 그리고 그러한 돌봄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쟁점이 된 비밀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고 명백하게 승낙을 한 경우에, 그때 가르치는 장로나 목회 파송의 치리장로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공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장로나 목회 파송을 받은 치리장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인명 위해의 가능성이 화급한 경우이면, 비밀 정보라 해도 밝힐 수 있다.

#### 4.0302 보고 의무

안수목회에 종사하고 있는 본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본 교회에 고용된 모든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은, 미성년자나 정신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유기와/또는 성적 희롱이나 학대 정보를 (1) G-4.0301에 명시된 대로, 그러한 정보를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을 때; (2) 그이나 그녀가 법에 의해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 의무에 묶여있지 않을 때, 또는 (3) 앞으로도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그 또는 그녀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반드시 교회당국과 민간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제 5 장 에큐메니시티 연합

### G-5.01 에큐메니칼 결단

#### 5.0101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보다 가시적으로 표명되도록 모든 차원에서 추구할 것이며, 타 교회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행동을 취하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또한, 타 개혁주의와 기독교 종교단체들과의 관계를 개시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 5.0102 종교간 관계

미국장로교는 비기독교적 종교 단체들과 대화와 이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든 차원에서 추구할 것이다.

#### 5.0103 세속적인 기관들

미국장로교는 세속적인 조직 및 기관들과 대화와 공동 결의를 취하는 접근이 세상에서 교회의 선교를 이행하는 가망성을 나타낼 때 이의 접근을 전차원에서 개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 G-5.02 타교단과의 관계

#### 5.0201 통신관계

총회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추구함에 있어서(G-5.0101), 그러한 취지와 의도의 약정서나 협정서나 선언문들 타 기독교 교단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을 허가하고 지시할 수 있다.총회에 의해 허가되고 승인 받은 그러한 결의들은 세례의 상호인정과 질서있는 목사교환 이슈를 다룰 수 있으며, 이슈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 교회의 모든 협의회들이 타 기독교 교단들과 ‘상호 확인과 권고’로서 함께 목회하는 기회에 관여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총회는 총회사무처를 통해 아래의 최고 협의회나 치리기관과 통신연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a. 총회 승인을 받고 미국 밖에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교단들,
- b. 미국장로교와 에큐메니칼 연합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
- c. 총회 승인 하에 미국장로교와 공식적인 에큐메니칼 대화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

5.0202 **완전 교류**

미국장로교(PCUSA)의 총회는, 총회의 인정을 받은 그러한 교단들과 완전 교류관계에 있다. 완전 교류는 에큐메니칼 합의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세례의 상호인정과 질서있는 목사들의 교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회의 협의회들은 미국장로교(PCUSA)와 완전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들과 상호간의 확인과 권고를 통해 목회하는 기회에 관여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5.0203 **에큐메니칼 선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F-1.0302a, G-5.0101), 총회사무처는 상기 언급의 관계에 추가하여, 공식합의서와 에큐메니칼 일치선언문을 타 기독교 교단들과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선언문과 약정서는 공동 결의의 지표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다음 노회가 이를 확인하거나 부결하도록 노회로 보낸다.

**G-5.03 완전한 조직적 연합**

타 교단과 미국장로교와의 완전한 조직적 연합은 다음의 승인에 의해 발효되어야 한다:

- a. 제안된 연합안에 대해 총회가 승인하고 그 권고안을 노회로 보냄;
- b. 노회의 2/3 표결을 서면으로 승인;
- c. 차기 총회 또는 연합제안계획에 명시된 기타 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완성화시킴.

**G-5.04 연합 노회들**

미국장로교회(PCUSA)의 노회는 각각 소속한 대회나 비등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타 개혁신교단 소속인 하나 이상의 협의회나 치리회와 연합 노회를 형성할 수 있다.

5.0401 **헌법적 권한**

연합 노회는 그 연합이 대표하는 각 교단의 헌법에 종속된다. 교단 헌법이 서로 다른 상이할 때는 반드시 헌법의 강제조항이 종속적인 조항에 응용되어야 한다. 서로 상충되는 강제 조항들이 있을 때 연합 노회는 각 교단의 최고 협의회나 치리회의 권위적 해석에 의해서나 헌법 개정의 의해 갈등이 해소되도록 상정해야 한다.

5.0402 **연합 계획**

연합 노회는 소속 노회나 치리회의 2/3 표결을 받아 연합노회계획의 채택안으로 창설되어야 한다. 연합되는 각 조직에 관할권을 가진 대회와/또는 치리회가 그 연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G-5.05 연합 교회적 간증**

선교전략이 이를 요구할 때, 노회는 본 교단과 타 기독교 교단의 개교회들과 연합간증 조직 창설을 승인할 수 있다.

a. 그러한 연합간증은 이에 참여하는 각 교단의 헌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교단들의 헌법이 서로 다른 상이할 때는 어떤 경우에서나 헌법의 강제조항이 종속적인 조항에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 상충되는 강제조항이 있을 때 개교회의 협의회는 차상급 협의회나 치리회에 갈등해소를 청원해야 한다.

b. 그러한 연합간증은 적법하게 소집된 각 개교회 공동의회에서 2/3 다수결로 승인되고, 각 교단 노회나 비등한 협의회나 치리회에서 승인을 받은 계획과 일치되게 조직되어야 한다. 연합간증조직 계획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 연합간증 조직에 참여하는 개교회들과 협의하고, 관할내의 차상급 협의회나 치리회와 협의한 후에, 노회는 미국장로교가 완전한 친교나 유대를 나누는 그 교단으로부터 어느 개교회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러한 그 교단으로 어느 개교회를 이전(G-3.0303b)하는 것이 그 개교회의 선교전략 달성에 보다 이롭다고 결정되는 경우 그 교단으로 이전한다.

## 제 6 장

### 헌법 해석 및 개정

#### G-6.01 개혁

미국장로교(PCUSA)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힘 안에서 “개혁된 교회이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한다(F-2.02). 다음의 해석과 수정안 절차들은 이러한 결단에 비추어, 성실성의 방편으로 이해된다.

#### G-6.02 헌법 해석

총회는 *규례서*에 대한 권위적 해석을 마련할 수 있다.

총회는 9 명의 헌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가르치는 장로들과 치리장로들의 수가 가능한 한 거의 동수가 되도록 선출해야 한다. 총회의 지정서기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어야 한다.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6 년의 전임기를 마친 위원은 6 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 4 년간 안식년을 가진 후에야 재선출 자격을 갖는다. 총회는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자체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규례서*에 관해 총회의 해석을 요구하는 교회 협의회의 모든 질문들은 차기 총회가 회집되기 전, 적어도 120 일간의 여유를 두고 총회 지정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 서기는 그러한 헌법 해석의 질의를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사법전권위원회에 계류중의 현안들은 제외). 헌법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고서와 권장안을 차기 총회로 적어도 개회 60 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

#### G-6.03 신앙고백서 개정

본 교단의 신앙고백 문서들에 대한 개정은 다음 절차들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 a. *신앙고백서* 개정안을 교회에서 연구하도록 총회가 승인한다.
- b. 총회가 그 제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한 대회 출신이 2 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 위원수는 15 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제안을 발의한 위원회나 협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는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c. 차기 개회의 총회는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하며,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 개정 제안을 노회가 승인하도록 추천한다.
- d. 제안된 개정안이 2/3 노회들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는다.

e. 의무화된 2/3 노회들의 승인을 받고 이 승인 통지가 접수된 다음에, 그 개정안은 정식으로 승인되어 차기 총회에서 법문화된다.

**G-6.04 규례서 개정**

규례서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절차들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한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a. 규례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제안을 다음 총회가 회집되기 전, 적어도 120 일의 기한을 남겨두고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b. 총회서기는 규례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제안들을 헌법자문위원회(G-6.02)에 회부하고, 그런 다음 헌법자문위원회가 개정안 언어의 명료성과 무(無) 모순성 그리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양립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 자문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와 권장안을 총회에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및 권장안에는 헌법 개정 제안의 수정 버전이 포함될 수 있고, 동 위원회가 위촉받은 제안에 대한 수락/부결 권고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헌법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권장안이 고찰되기까지 총회는 어떠한 개정안도 심의 할 수 없다.

c. 동일한 총회는 개정안을 승인하고, 노회의 투표를 위해 노회로 회부하기도 한다.

d. 노회들은 제안된 개정안을 전달한 집회가 산회(散會)한 후 1 년미만 내에 그들의 의결사항을 지정서기에 보내야 한다.

e. 지정서기가 규례서의 개정 제안에 대해 전체 노회의 대다수가 승인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는다. 이와 같이 승인된 그 개정안은 이를 전달한 집회가 산회(散會)하고 1 년이 될 때 발효한다.

**G-6.05 예외조항**

이 헌법의 G-4.0208 조항들은 개정될 수 없다.

**G-6.06 특별조항의 개정**

신앙고백 문서들에 대한 개정절차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에 효과를 미치는 절차(G-5.03)는 거기에 지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